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22호

서울특별시 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59-1 일대를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3조 및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4조 및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 제8조, 「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21년 12월 30일
서울특별시 장

1. 생태·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현황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59-1일대(암사생태공원)
- 지정면적 : 143,435㎡
- 지정내용

지역명	구 분	면적(㎡)	비 고
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	합 계	270,279	
	핵심보전구역	126,844	기존
	원충보전구역	143,435	확대

○ 토지조서

번호	지 번	지목	지적면적(㎡)	지정면적(㎡)
합 계(원충보전구역)			707,001	143,435
1	강동구 암사동 147-6	하천	13,012	117
2	강동구 암사동 148-9	하천	16,000	2,317
3	강동구 암사동 164-2	하천	28,255	14,379
4	강동구 암사동 613-11	하천	13,256	10,788
5	강동구 암사동 613-13	하천	411	262
6	강동구 암사동 616	하천	149,432	311
7	강동구 암사동 616-1	하천	10,215	10,092
8	강동구 암사동 618-1	하천	1,861	254
9	강동구 암사동 618-2	하천	521	380

번호	지 번	지목	지적면적(㎡)	지정면적(㎡)
10	강동구 암사동 657	하천	19,912	744
11	강동구 암사동 657-1	하천	16,237	4,540
12	강동구 암사동 658	하천	159,883	1,638
13	강동구 암사동 658-1	하천	11,462	11,253
14	강동구 암사동 659	하천	57,157	2,703
15	강동구 암사동 659-1	하천	46,721	46,530
16	강동구 암사동 660	하천	107	89
17	강동구 암사동 660-1	하천	28,670	28,277
18	강동구 암사동 660-3	하천	775	373
19	강동구 암사동 661	하천	126,186	1,460
20	강동구 암사동 661-1	하천	6,928	6,928

2. 지정사유

- 암사생태공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호안은 자연형으로 조성하고, 둔치는 치수상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형을 적절히 조절하여 자연형 생태공간으로 2008년 12월에 조성(개장) 되었으며,
- 핵심구역인 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과 주변 자연생태공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암사생태공원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기존 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과의 통합관리를 하고자 함

3. 생태·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

가. 행위제한(『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』 제10조 제1항)

- 핵심보전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, 채취, 이식, 훼손하거나 고사(枯死)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, 덫, 올무, 그물, 함정 등의 설치 및 유독물·농약 등을 살포(撒布) 또는 주입하는 행위
- 하천·호소(湖沼)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
- 토석의 채취
- 수면(水面)의 매립 또는 불을 놓는 행위
-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·증축(생태·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) 및 토지의 형질변경

나. 금지행위(『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』 제10조제3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7조)
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
- 인화물질(휘발유·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나 자연발화성 물질, 기체연

- 료)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
-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옮기는 행위
 - 소리·빛·연기·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
 - 야생생물의 둥지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
 - 가축의 방목, 동물의 방사.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·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,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방사하는 경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에는 방사할 수 있다
 - 생태·경관완충보전구역에서 풀·입목·죽을 채취·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·농약 등을 살포·주입하는 행위
 - 생태·경관완충보전구역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·땃·올무·그물·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. 다만,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「문화재보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다.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(『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』 제10조제2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)

-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천재·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생태·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·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행하는 경우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경영계획·산림보호 및 산림유전 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시장이 해당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
-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·허가 또는 승인 등(이하 "인·허가등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. 이 경우,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. 이 경우,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·허가등을 하기 전에(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)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·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
- 생태·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
-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

○ 그 밖의 생태·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생태·경관보전지역 관리 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

4.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(『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』 제 39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9조)

가. 조치를 위반한 사람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5.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

가. 관리기관 : 서울특별시(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)

나. 위임관리기관(『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』 제39조)
: 한강사업본부

6. 지형도면 고시 및 열람 (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)

가. 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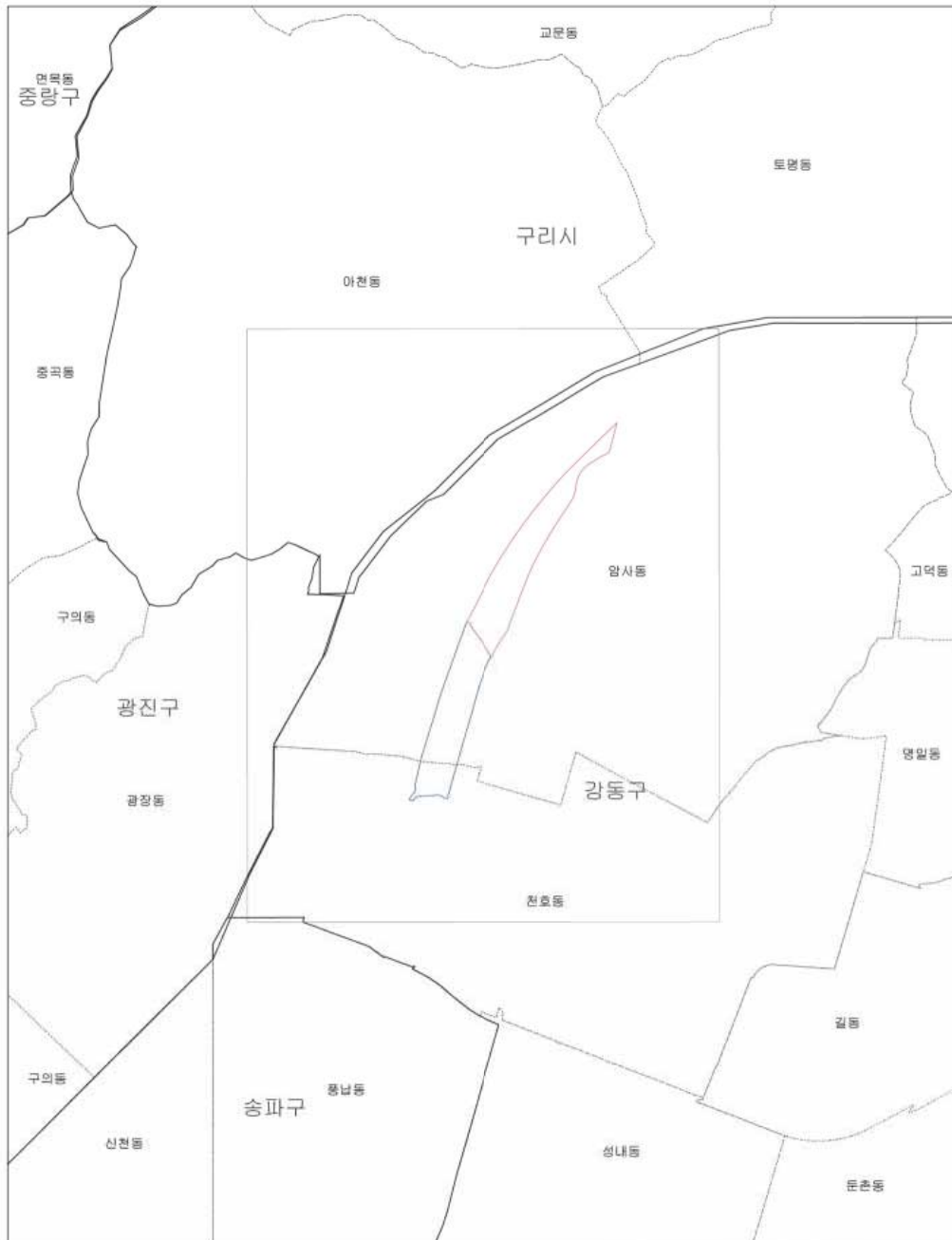
나.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다. 열람장소

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를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(☎2133-2148) 및 관리를 위임 받은 한강사업본부(☎3780-0859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 총괄도



서울특별시

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 확대지역(한울구역) 2021년 12월 30일 발령
 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(2002년 기지점)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22호

생태·경관보전지역

- 서울특별시 암사동 생태·경관보전지역 -

